

의안번호	2215580
의 퇴 인	김소희의원
회 답 일	2026. 3. 9.
추계번호	25B7313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의2(기후보험의 운영) 신설	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 및 보험의 운영·관리 등의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종류, 대상, 가입 방식,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47조의3(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신설	정부는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기후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
3	안 제81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	정부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보험업법」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7조의2(기후보험의 운영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7조의3(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
3	안 제81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	

2. 상세 사유

가. 기후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(안 제47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보험료의 일부 또는 보험의 운영·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,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재정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에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고,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였으며, 2026년에는 기후보험체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연구를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음

[표 1] 기후보험 도입방안 마련 연구용역 관련 현황

용역명	수행기간	수행기관	계약금액
기후보험 도입방안 마련 연구	2025.4.14.~10.10	한국리스크관리학회	4,970만원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[표 2] 2026년 기후보험 관련 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기금·회계명	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2026
기후대응기금	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(6331-301)	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(기후보험체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연구)	300

자료: 기획재정부

- 다만, 추가재정소요는 기후보험의 종류, 가입대상 및 보장범위, 보험료 산정 방식,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여부와 지원 수준 등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항들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나.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업무위탁 (안 제47조의3 및 제81조)

□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 자료·정보의 체계적 수집·관리를 위하여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그 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는 경우, 시스템 구축·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업무위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○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기후보험 도입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계획 또한 구체화되지 않음

□ 다만, 추가재정소요는 기후보험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내용과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·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관련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